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박주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94
----------	------

발의연월일 : 2022. 11. 24.

발의의원 :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안 제3조)
- 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지원내용 등(안 제4조~안 제8조)
- 다. 비밀준수와 시행규칙(안 제9조~안 제10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가 사망하기 전까지 보유한 채무로서 상속인인 아동·청소년에게 상속되는 것을 말한다.
3. “법률지원”이란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및 송달료 지원,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관할법원에서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법률지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법률지원 요청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7일 내에 그 사항을 제6조에 따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대상자를 발굴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아동·청소년(이하 이 조에서 “지원대상자”라 한다)이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고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비용과 제1항 및 제2항의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사망한 부모의 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신청서

1.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대리인 신청시 인적사항

○ 성 명 : (관계)

○ 생년월일 :

○ 주 소 :

2. 법률지원 요청내용

○

○

3. 재산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확인 동의 여부

동의() 부동의()

20 . . .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귀하

아동·청소년 부모 및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관리대장

1. 지원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률지원 요청내용(요약 또는 관련서류 첨부)

2. 지원내용, 진행사항 및 결과

-
-
-

3. 기타 참고사항

-
-
-

□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 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책임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